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179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86,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6. 5. 피고로부터 펌프 외각 철판 케이스 45세트를 18,720,000원, 용접 및 사상 45대를 7,200,000원, 분체도장 45대를 4,500,000원, 트레일러 45세트를 34,093,960원 합계 64,513,96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추가 대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6,486,040원[= 36,000,000원 + 486,040원(= 65,000,000원 - 64,513,960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5. 피고로부터 펌프 외각 철판 케이스 45세트를 18,720,000원, 용접 및 사상 45대를 7,200,000원, 분체도장 45대를 4,500,000원, 트레일러 45세트를 34,093,960원 합계 64,513,960원에 제작,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에게 위 대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제작 과정에서 추가 자재 등 물품 구입 비용으로 15,988,633원, 소외 D의 인건비 28,071,820원, 미지급 인건비 11,035,500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재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 또는 D에게 그 중 일부로 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36,486,04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경